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61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387 호

1973.7.13.

#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788 호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제 789 호	서울특별시 재해위험지구내외 건축제한에 대한 조례..... 3
제 790 호	서울특별시 번소개량에 대한 조례..... 5
◎ 사 령	..... 12
◎ 정 정	..... 13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조례제 788호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조는 서울특별시 보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제3조의 2로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보건소는 보건의원 제4조에  
규정된 업무분장 관장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의무기정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명을 받아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  
다.

제5조와 제6조중 제6조와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 보건소에 민원봉사실, 위생과,  
보건지도과, 방역과를 두며 민원봉사  
실장과 위생과장은 지방보건 사무관  
으로, 보건지도과장은 지방의무기좌로  
방역과장은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

별표중 서울특별시 병부구보건소의 관  
할구역에 도봉구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보건소의 관할구역에 관악구를  
각각 삼입한다.

부 칙

이 조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승인등언어 제정한 서울특  
별시지래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백식

197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조례제 789호

서울특별시지래위험지구내의건  
축제한에관한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재해위험지구(이하 "위험지구"라 한다)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수침수구역"이라 함은 홍수때 외수로 인하여 침수될 우려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내수침수구역"이라 함은 홍수때 내수로 인하여 침수될 우려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 3조 (위험지구의 지정) ①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강인도교 수위가 10.5미터로 상승되었을때 외수 및 내수가 침수되는 구역
2. 호우시 산사태가 일어난 우려가 있는 구역

②서울특별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험지구의 위치, 구역 및 그 면적을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4조 (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험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신 및 중요변경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지구내의 대지의 지반면이 한강인도교 수위가 10.5미터일때 내수 및 외수로 인한 침수면보다 1미터 이상 높고, 지구의로부터 강해 때까지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대지안의 건축물
2. 국제적외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주차장, 경유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4. 자동차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5. 공사용 현장 사무소 및 창고
6. 홍평, 박람회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가설 건축물로서 준차기간이 6개월 이내

의 건축물

7. 제 2호 내지 제 4호에 제기하는 건축물의 부속 건축물

제 5조 (위험지구내의 건축물의구조) 제 5조 (위험지구내의 건축물은 부속 이외의 구조로서 침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 6조 (부적합기존건축물에대한 조치) 위험지구의 지정 당시 기존 건축물이 제 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개수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내 식

197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조례제 799 호

서울특별시변소개량에관한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제 2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소개량을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과 지정구역내의 불량변소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강수질의 오염을 방지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량변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변소를 말한다.
  - 가. 처리수익이되지 못수판이 오물 집하조반 설치되지 아니하고 적정 하수도의 연결된 변소
  - 나. 저수조의 청소가 불가능한 변소
  - 다. 분뇨탱크가 결함누설로 되어 있지 아니한 변소
  - 라. 오물정화조 유출수의 양이 과잉인 하수도관과 같이 오물이나 하수의 유출이 불가능한 변소

2.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및 「종말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 2조 제 2호 제 4호 및 제 5호에 규정한 구역 및 시설을 말한다.

3. 「수세식변소」라 함은 내칙수에 의하여 분뇨를 하수도에 방류시키는 변소를 말한다.

4. 「수조식변소」라 함은 변소에서 나오는 세척수와 분뇨를 오분정화조를 거쳐서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정화한 후 하수도에 방류시키는 변소를 말한다.

5. 「개량변소」라 함은 변소에서 나온 분뇨를 저류조와 피내기조를 거쳐서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정화한 후 퍼내는 변소를 말한다.

제 3 조 (변소개량을 위한 지정구역의 지정) ①서울특별시(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에서 변소개량을 위한 지정구역(이하「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상수도 및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완비된 지역
2.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3.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

4. 기타 시장이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②시장이 전항회 규정에 의한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항회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시된 구역내의 모든 변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량변소, 수조식변소 또는 수세식변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현저한 것으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변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구역내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처리구역외의 변소는 수조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조식 변소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량식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기존변소의 개량) ①시장은 전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시된 지역내의 기존변소중 불량변소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전조 제 3항 각호의구분에 따라 이를 개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명령을 받은 번소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개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개량신고서에 번소도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신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불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번소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신고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을 받은후가 아니면 그 번소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명령을 받은 번소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전 항하의 규정에 의한 개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량이 끝날때 까지 당해 번소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 5조 (전축번소의 허가 및 준공) 번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전축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전축허가신청서와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번소도면을 첨부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축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받은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제 6조 (전항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전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제 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호서식

불량 변소 개량 신고서

서울특별시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면첨부 신청합니다.

- 1. 설치장소:                    구            동            번지            호
- 2. 건축주:                    구            동            번지            호
- 3. 건물의 종류:                용도:                    열건방:
- 4. 1 일평균 대상인원:
- 5. 변소의 형식, 구조:
- 6. 세척수의 사용계획:
- 7. 소독방법:
- 8. 방류장소:

첨부: 변소개량도면 1 부

서기 197    년    월    일

신고자주소:    구    동    번지    호

성명

서울특별시 장귀하

제 2 호 석회

수 세 식 변 소  
수 조 식 변 소  
개 량 변 소  
준 공 신 고 서

서울특별시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준공 신고합니다.

- 1. 설치장소 :
- 2. 건물주 :
- 3. 건물의 종류 :
- 4. 1일평균 대상인원 :
- 5. 형식, 구조 :
- 6. 세척수의 사용계획 :
- 7. 소류의 방법 :
- 8. 방류의 장소 :
- 9. 공사완료일자 :

서기 197    년    월    일  
 신고자주소:    구    등    번지    호  
 성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 3 호 서식

검 사 필 증

197 년 월 일

제 호

서울특별시 강 신

서울특별시 번소 개량에 관한 조례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번소의 공사는 검사 결과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함.

1. 허가번호:

2. 허가년월일:

3. 주요용도:

인면적:

4. 건축장소 또는 축조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5. 건축주 주소, 주민등록증 번호:

성명:

6. 검사년월일: 197 년 월 일

7. 검사원 직위 성명: 인

제 4 호서식

수색식빈소  
수조식빈소  
개당빈소  
의  
가  
신  
청  
서

서울특별시 빈소개방에 관한 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도면첨부 신청합니다.

- 1. 설치 장소 :            구            동            번지            호
- 2. 건    축    주 :            구            동            번지            호
- 3. 건물의 종류 :            용도 :            연건평 :
- 4. 1일평균 대상인원 :
- 5. 빈소의 형식, 구조 :
- 6. 설치수의 사용계획 :
- 7. 소    득    방    법 :
- 8. 방류 장소 :

첨부 : 빈소설치도면            1부

서기 197    년            월            일

신청자주소 :            구            동            번지            호

성명 :

서울특별시장 귀하

사 명			
<p>① 1973. 7. 1.</p> <p>지하철건설지방본부공사과장 직무기정 김병린 지하철건설본부 건설과장에 포함.</p> <p>지하철건설본부 지방본부공사과장 직무기정 서인원 지하철건설본부 지방과장에 포함.</p>		<p>마포병원 지방보건사보(법리) 홍수길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p> <p>마포병원 지방보건기원보 민영란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p> <p>마포병원 지방약무선 유영숙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마포병원 지방약무선 심상겸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② 1973. 7. 11.</p> <p>마포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이남순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p> <p>마포병원 지방간호기원보 정윤남 영동병원 근무를 명함.</p> <p>마포병원 지방간호기원보 임천자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마포병원 지방간호기원보 박희순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마포병원 지방간호기원보 방민자 1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마포병원 지방간호기원보 권태숙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마포병원 지방간호기원보 조연희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p>		<p>모독시험소 지방모독정 황숙재 지하철건설본부공사과장에 포함.</p> <p>지하철건설본부 지방모독정 성옥호 지방모독정 기원보 소장에 포함.</p> <p>기전과 지방전기사 김동호 총무과관리계장직무대리를 명함.</p>	
		<p>③ 1973. 7. 12.</p> <p>도시계획과 지방토목사 김주한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p> <p>마포구 지방토목기원보 김혜양 모독시험소 근무를 명함.</p>	
		<p>④ 1973. 7. 15.</p> <p>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정세명 지방농림기사보에 포함. 7호봉을 급함. 조경과 근무를 명함.</p>	

(정 정)

1973년 7월 5일자로 발간예부된 시보 제 384 호그 1이 제 384 호그 2의  
오шиб였기 정정 합니다.